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9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출산육아지원시설 세액공제 신설 (김소희의원안)	3

I. 개요

1. 김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79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면서 현행법은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축소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육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출산육아지원시설 세액공제 신설 (김소희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출산육아지원시설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②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지출하는 금액 ○ 세액공제율 : 15%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김소희의원안 2024. 12. 20. 발의(의안번호 6790)

□ 개정안은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지출하는 금액의 15%를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¹⁾

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의무대상 사업장 1,639개소중 1,52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²⁾(406개소)를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하였고 이후 5년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현황]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90.1	90.2	90.9	90.9	91.5	93.1

주: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편, 당초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비³⁾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다가 2020년 세법개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1%(중견기업은 5%~7.5%,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2) 개별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함.

3)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 3) (생략)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출산육아지원시설의 취득 및 운영 비용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출산·육아에 따른 부모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⁵⁾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⁶⁾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또한,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선정(25.2%)되는 등 육아 관련 정책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5)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6)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성별·연령별)]

(단위: %)

구분		초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알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전체		5.1	15.7	10.2	25.2	9.3	17.1	11.2
성별	남성	6.1	17.7	11.3	20.9	10.4	18.7	8.6
	여성	4.2	13.7	9.1	29.3	8.3	15.5	13.7
연령별	25세~ 30세	6.9	19.7	12.9	26.1	8.0	15.4	7.5
	30세~ 40세	6.2	21.0	14.5	24.9	6.7	15.0	9.5
	40세~ 50세	5.4	19.1	10.3	23.0	9.5	17.3	12.4
	50세~ 60세	5.5	14.9	9.2	24.9	9.7	19.0	12.0
	60세~ 70세	4.4	12.2	8.5	27.1	10.4	17.5	12.7
	70세~	3.1	8.2	7.0	25.7	10.8	16.9	10.7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2024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돌봄서비스에 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게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자발적 설치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은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실질적 유인효과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의 효용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립·운영에 대한 재정사업 및 세제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의 시설비 및 교재비, 보육교사 임금,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참고로 2023년에는 1,11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1,07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사업]

· 설치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등	
무상지원('00)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금액의 60% 지원(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지원)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금액의 90% 지원(시설매입비: 소요금액의 40% 지원)
		공동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교재교구비	대규모 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 대규모기업: 소요금액의 60% 지원(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요금액의 90% 지원 - 교제비: 3년마다 3천만 원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 운영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인건비 지원 (‘95)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60만 원(중소기업 월138만 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 교사인건비지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5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 말일 보육 아동 인원 - 39명이하: 월200만원 - 40명~59명이하: 월280만원 - 60명~79명이하: 월360만원 - 80명~99명이하: 월440만원 - 100명이상: 월52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는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1%(중견기업은 5%~7.5%,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